

이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1. 7. 12
자치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년 6월 28일 이천시장 제출
- 나. 회 부 일 자 : 2001년 6월 28일
- 다. 상 정 일 자 : 제48회 이천시의회(제1차 정례회)
제1차(2001. 7. 6) 자치행정위원회 상정
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김종화)

가. 제안이유

토지(임야)대장에 전자관인을 사용하고 전자정부 구현을 위하여 전자결재가 시행됨에 따라 민원사무관리규정에 의거 전자관인을 사용하고자 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- 시장 및 실·과·소·읍·면·동장이 전자공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
(안 제4조제2항)
- 공인의 등록 및 절차를 규정함(안 제7조)
- 공인의 공고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(안 제10조)
- 공인의 신조 및 개각 인영보고 규정을 삭제하고 공인의 등록 절차 및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문화 함
- 기존 공인의 폐기 규정에 공인의 재등록에 관한 절차 규정을 추가함
(안 제12조)

(제48회-제2차)

- 전자공인의 사용을 위하여 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 규정을 신설함
(안 제12조의2)
- 공인의 날인에 관한 규정을 일부 보완하였음(안 제16조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윤순성)

본 조례안은 정보화시대를 맞으면서 컴퓨터 사용이 필수화 됨에 따라 민원서류의 전자공인을 사용토록 하고, 한편 공인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등록·관리규정을 구체적으로 명문화등 보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만장일치)

7. 기타사항 : 없음